

수원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단522450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정이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김영석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 5. 10.까지, 피고 C은 2021. 5. 31.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0. 5.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될 타운하우스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금액 624,5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2.부터 2020. 5. 30.까지 피고 B에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2020. 6. 10. 원고에게 ‘2020. 10. 1.에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피고들이 약정한 2020. 10. 1.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2020.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피고 B : 2021. 5. 10., 피고 C : 2021.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D 역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